

준법감시인 임면 보고

문서번호 20191015-01

2019 . 10 . 15 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자산운용제도팀, 자산운용총괄팀

제 목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9 . 10. 10.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임과 같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준법감시인 선임 내용 1부.
2.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주식회사 피티알자산운용
대표이사 원 종 상 (인)

작 성 자 : 조현진 (직 위)경영지원팀장

전화번호 : 02-2039-3812

(붙임 1)

준법감시인 선임 내용

1. 준법감시인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경력 ¹⁾	자격요건 확인결과
김진수 (金鎭秀)	상무	비등기	610505	2019.10. 12. (2회)	2021. 10.11	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업무전반	위험관리 책임자, 위험관리 업무전반	2017.06.~현재 피티알자산운용 2008.06.~2015.06. 리딩투자증권 1987.08.~2004.06. 골든브릿지투자증권	자격요건 이상없음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김진수 (金鎭秀)	직위	상무
심사항목		심사결과	
		비고	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상기인이 근무했던 소속회사와 관계기관에 확인 결과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징계내역 및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음.	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상기인은 심사항목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함. 2017.06.26.~현재 피티알자산운용 2008.06.09.~2015.06.19. 리딩투자증권 1987.08.01.~2004.06.30. 골든브릿지투자증권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상기인은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, 준법감시업무 및 위험관리업무 등 내부통제업무만 전담.	
종합의견 위의 심사 결과 상기인은 당사 준법감시인으로 적격하다고 판단.			
2019년 10 월 11 일 주식회사 피티알자산운용 준법감시인 김진수 (인) 주식회사 피티알자산운용 대 표 이 사 원종상 (인)			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/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명 (한자)	김진수 (金鎭秀)	직위	상무
심사항목		심사결과	비고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상기인이 근무했던 소속회사와 관계기관에 확인 결과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징계내역 및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음.	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상기인은 심사항목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함. 2017.06.26.~현재 피티알자산운용 2008.06.09.~2015.06.19. 리딩투자증권 1987.08.01.~2004.06.30. 골든브릿지투자증권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상기인은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, 준법감시업무 및 위험관리업무 등 내부통제업무만 전담.	
종합의견 위의 심사 결과 상기인은 당사 위험관리책임자로 적격하다고 판단.			
2019년 10 월 11 일 주식회사 피티알자산운용 준법감시인 김진수 (인) 주식회사 피티알자산운용 대표이사 원종상 (인)			

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-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